

덕송~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업무 약정 체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11. .
제안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 및 제49조 제2항에 의거 남양주시와 경기연구원(공공투자관리센터) 간 덕송~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약정명: 덕송~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('21.12월 약정체결 예정)
- 약정기관: 남양주시, 경기연구원(공공투자관리센터)
- 약정내용: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업무 내용 규정

구분	기관명	업무내용
기관별 업무	남양주시	· 협상 시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지원
	경기연구원 (공공투자관리센터)	· 협상단 구성 및 운영 등 협상 업무 전반 · 변경 실시협약(안) 작성, 실시협약 체결 지원
약정기간	변경 실시협약 체결시까지(수수료 입금일로부터 12개월)	

※ 협상 및 실시협약 변경 : 전문기관 위탁 (수수료: 70,000천원)

3. 향후계획

- '21. 12. : 협상 약정(안) 시의회 의결 및 약정 체결
- '21. 12. ~ : 협상단 구성 및 운영 등 협상 추진
- '22. 02. ~ 12 :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(남양주시), 변경 실시협약 체결

「덕송 ~ 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」 업무수행 약정서

「덕송~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」 사업시행조건 조정과 관련하여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대행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, 남양주시와 경기연구원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약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 제3항, 제49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에 의거한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(공공투자관리센터, 이하 “경기공투” 라 한다)에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대행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,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이하 민간투자법)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.

1. “실시협약”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함
2. “사업시행자” 라 함은 남양주시로부터 민간투자법, 동법시행령,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(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주식회사)을 말함
3. 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”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의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고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함

제3조(업무명) 본 약정에 따라 경기공투가 수행할 과업명은 「덕송~내각 고속화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」 이라 한다.

제4조(기관별 임무) ① 경기공투는 남양주시가 의뢰한 「덕송~내각 고속화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」 대행 업무를 전문적·객관적·독립적으로 수행하며,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. 또한, 동 업무는 관련 법령 및 기타 업무지침을 활용하고 학계·연구기관·민간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 및 분석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수행한다.

- 가.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계획 수립(협상의 전반)
- 나. 협상단 등의 구성 및 운영
- 다. 협상 회의록 작성
- 라. 변경 실시협약(안) 작성 및 실시협약 체결 지원
- 마.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(사전) 심의 시 업무 지원
- 바.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합의된 사항

② 남양주시는 제공 가능한 범위에서 경기공투에게 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,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협상 시 필요한 자료 제공
- 나. 협상 행정 지원, 기타 본 협상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
- 다. 남양주시 대표 협상단원으로 참석
- 라.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합의된 사항

제5조(대상사업의 내용) 본 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가. 사 업 명 : 덕송~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
- 나. 위 치 : 남양주시 별내동 ~ 진접읍 내곡리
- 다. 사 업 량 : L=4.901km, B=20.0m(왕복 4차로)
- 라. 사 업 비 : 1,649억원(민자 1,649억원/시비 0원) / 2007.10.01. (불변가)
- 마. 공사기간 : 2013.10.14. ~ 2017.04.13.(운영 2017.04.14.~2047.04.13. 30년)

제6조(협상단 등 구성 및 운영)

- ① “경기공투”는 협상단 등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위촉, 운영 방법 등이 포함된 협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, 투명하게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협상단 구성의 기한은 수수료 입금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.

제7조(수수료 및 지급) ① 본 약정에 의한 업무 대행 수수료는 경기공투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대행 수수료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결정한다.

- ② “경기공투”는 본 약정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상 계획서가 포함된 연구계획서 및 수수료 산정 내역(별표 1)을 첨부하여 수수료 청구를 하고, 남양주시는 수수료 청구 공문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한다.
- ③ 남양주시의 요청 등에 따라 업무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남양주시와 경기공투는 변경되는 조건 등을 반영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경우의 추가 지급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하되 지급 기한은 남양주시와 경기공투의 예산확보 일정에 맞추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약정기간) ① 약정 기간은 수수료 입금일로부터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 협상 업무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.

②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반 사유로 인하여 본 업무 수행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약정의 변경) 본 약정이 체결된 이후 약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제10조(자료제출 및 협의) ① “경기공투”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변경 실시 협약 체결 후 45일 이내에, 업무수행 최종결과를 “남양주시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경기공투”는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, 해당 시점까지 완료한 업무수행 결과를 “남양주시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“남양주시”는 필요한 경우 “경기공투”에 협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협의 및 자료 제출,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경기공투는 합리적인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) ① 남양주시와 경기공투는 다음의 경우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협상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2.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
3. 주무관청의 정책 변경 등으로 주무관청이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
② 상기 사유 등으로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, 남양주시와 경기공투는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상호 합의하에 조정한다. 다만 “경기공투”의 책임없는 사유로 1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.

제12조(해석) 이 약정서에 대한 해석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제13조(비밀의 유지) ① “경기공투”는 협상 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협상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“경기공투”는 협상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약정서의 작성 및 보관) 본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남양주시와 경기공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5조(약정의 효력발생) 본 약정은 남양주시와 경기공투가 약정서에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2021년 12월 일

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
남양주시청
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
경기연구원

시 장 조 광 한 직인

원 장 직무대행 허 성 관 직인